

---

#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

---

## □ 도입배경

-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산업은 대부분 소규모·영세기업 위주로 구성, 소비자로부터 기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
- 정부에서 제품의 기능·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·평가,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신뢰성·공신력 확보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

## □ 제도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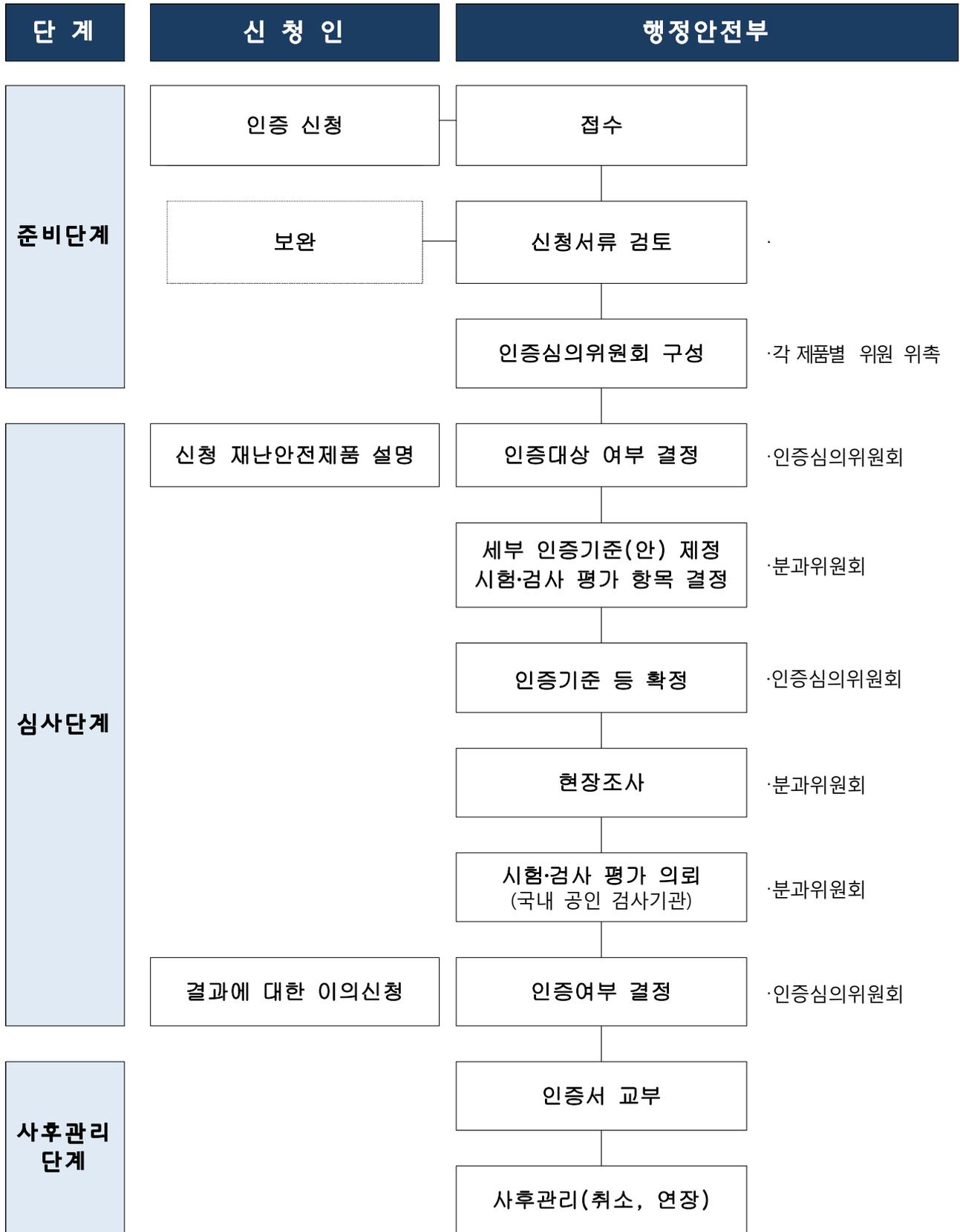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 4(재난안전제품 인증)
-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('18.2.22 시행)

## □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

- (임의인증) 제품 개발·생산자의 필요(수요)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
  - \* 무조건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이 아님, 신청자 임의로 신청할 수 있음
- (인증대상) 국민생활과 밀접하고, 타 인증대상과 중복성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 예정
  - \* 다만, KC인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한 기초적인 인증·검사 등은 거쳐야 함
  - \*\* 제품 설치 환경마다 설계가 필요한 제품, SW만으로 구성된 제품은 대상이 안됨
- (인증절차) 신청 → 서류검토 → 인증대상 여부 판단 → 세부 인증 기준 제정 → 현장심사 → 종합심사 → 인증서 발급
- (제출서류) 인증신청서, 자료 사전공개 동의서 및 제품 설명서 등
  - 국가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등 추가
  - 기타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추가 가능
- (수수료 등) 현재 신청 수수료는 없음. 다만, 추가 시험·검사가 필요할 시 업체 비용부담.
  - \*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시험·검사가 있을 시 시험·검사 평가 후 인증심의

# 참고 1

# 재난안전제품 인증 프로세스



□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(재난안전제품 인증 운영규정 제3조 관련)

인증 품목		품목별 정의
1. 예측·진단	1-1. 재난예측 제품	기상 및 기후변화,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
	1-2. 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
	1-3. 비구조물 진단 제품	구조물외 전기, 가스,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·점검하는 제품
2. 감지	2-1. 모니터링 제품	화재, 홍수,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
	2-2. 안전센서 제품	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
3. 대비	3-1. 개인보호구 제품	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
	3-2. 시설물보강 제품	노후,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·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
4. 대응	4-1. 확산방지 제품	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	4-2. 위험인자해소 제품	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
5. 대피	5-1. 비상탈출 제품	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
	5-2. 대피안내 제품	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
6. 구조	6-1. 해상구조 제품	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	6-2. 구조물 내 구조 제품	빌딩, 지하공간, 터널, 운송수단 등 구조물(시설)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	6-3. 야외구조 제품	산악사고, 산불,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
7. 복구	7-1. 시설물복구 제품	주택,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
	7-2. 구호 제품	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
8. 기타	8-1. 기타 재난안전 제품	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